

# 고 발 장

## 고발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02-2039-8361 / cfoi@opengirok.or.kr)

## 피고발인:

1. 제17대 대통령
2. 이명박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3. 이명박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
4.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
5.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당시 국가기록원장
6.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당시 대통령기록관장

## 고발대상 범죄:

- 피고발인 1, 2, 3, 4, 5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1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 피고발인 5, 6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30조 제 4항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재까지 피고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관계 및 피고발인들 중 그 사실관계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가 100%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밝혀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1)은 지난 2008년~2013년 2월까지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하고 대표한 17대 대통령입니다.

피고발인(2)은 지난 17대 대통령의 퇴임시기 퇴임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자입니다.

피고발인(3)은 지난 17대 대통령의 퇴임시기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리를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의 장을 맡는 연설기록비서관을 역임한 자입니다.

피고발인(4)은 지난 17대 대통령의 퇴임시기 및 재임기간 전체를 통틀어 대통령비서실 기록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을 맡은 자입니다.

피고발인(5)은 지난 17대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시기 중앙행정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장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히 수집·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6)은 지난 17대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시기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대한 이행 및 지원의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 2.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피고발인 (1), (2), (3), (4), (5), (6)의 범죄혐의는 2018년 1월 26일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당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압수수색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자료 1)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가 쓰여 있었으며, 일부 문서 상자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등의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청와대 공식문서의 표식인 봉황 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건 가량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 소유 빌딩에서 발견된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시인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집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거자료 2)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 밝히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만큼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발인 (1)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생산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관리예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적 소유물로 취급해 본인 소유건물인 영포빌딩으로 무단 유출한 것은 명백합니다.

피고발인 (2), (3), (4)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된 2012년 2월~ 이관 완료 당시까지 가장 핵심적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해 직접적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실무를 담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예관법』 제 9조 및 제 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멸실 없이 안전하게 중앙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 (2), (3), (4)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 중 어느 한 명, 또는 전부가 이번에 확인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혐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피고발인 (5), (6)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하고, 멸실 없이 안전하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그 중요성만큼 멸실 혹은 누출 없이 안전하고 빠짐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11조 제 4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이관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기간 동안 이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이관실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자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물 중 17문서상자는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못하고 무단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피고발인 (5), (6)은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책임 및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서 이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번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간접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자기록물(종이기록)의 경우 이관 할 당시 이관을 받는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확인 해 누락기록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락기록물이 있을 경우 추가로 등록 및 작성해야 합니다.

## 6. 비전자매체 기록물 이관

### ★ 이관목록 작성

- 이관 대상 기록물 확인 후, '기록물철' 단위로 작성
  - ※ 건 목록은 작성하여 기록물철안에 첨부
- 기록물 실물과 이관 목록의 작성 항목이 일치하도록 작성
  - ※ 기록물철 제목은 첩표지의 제목과 철 등 부분의 제목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확인한 후, 누락 기록물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정리하여 작성

<대통령기록물 이관 매뉴얼 중 비전자 매체 기록물 이관 내용 일부 캡처>

하지만 2008년~2012년도 대통령비서실 기록물 생산현황보고자료 (증거자료4) 상의 비전자기록물 중 '문서'기록물 731권은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현황 보도자료 상의 '종이문서' 현황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당시 이관 책임과 실무를 맡고 있던 피고발인 (5), (6)이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을 확인했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피고발인 (5), (6)은 기록물의 무단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아 무단 유출에 고의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 3. 피고발인들 혐의의 불법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업무수행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합니다.

이번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또한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법 제 30조 제4항)

그러므로 앞의 혐의사실에 따라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표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의 기록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당시 연설기록비서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시 행정관은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으며, 해당 법이 벌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히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인 당시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대한 이행 및 지원의 책임이 있는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은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으며, 해당 법이 벌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법 제30조 제4항) 대통령기록물 멸실에 중대한 과실의 책임이 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4. 결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법률이 정한 벌칙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물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관련자들까지 적발하여 엄격하게 처벌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증거 자료 -

1. 2018. 01.28. MBC 보도 <[단독] 'BH' 적힌 상자 17개...국정기록 유출?> 1통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10445\\_22663.html?menuid=nwdesk](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10445_22663.html?menuid=nwdesk)

2. 2018. 02.01. 뉴스1 보도 <MB측 "대통령기록물, 이사하다 실수로 보관...그래도 영장은 잘못">

[http://news1.kr/articles/?3224377&utm\\_source=dable](http://news1.kr/articles/?3224377&utm_source=dable)

3. 2012. 08.02.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한 계획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결정 통지서>

- <공개내용1. 17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계획>

- <공개내용2. 이관 추진 현황>

4. 2013. 05.03.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http://www.opengirok.or.kr/3488>

- 국가기록원\_제17대대통령기록물이관관련 보도자료 (2013. 02. 22)

- 2008년도\_대통령기록물\_생산현황.pdf

- 2009년도\_대통령기록물\_생산현황.pdf

- 2010년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pdf

- 2011년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pdf

- 2012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pdf

2018. 02. 05

위 고발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